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 접수 외에 모집도 가능화〉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7328호)

2022.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 접수 외에 모집도 가능화	2
※ 참고자료	
1. 도서관 기부 관련 해외 사례	8
2. 국립중앙도서관 등 기증접수 현황	9
3. 기부금품의 접수 허용 특례 입법 사례	10
4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른 11개 법률 모집특례 인정 사유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2. 9. 13.

다. 회 부 일 : 2022. 9.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외에 모집도 가능화 (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 도서관에 금전 등의 기부 - 누구든지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 가능 - 국·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u>기부금품 접수 가능</u> - <신설>	○ 도서관에 금전 등의 기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u>기부금품 모집도 가능</u> (금전은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기부금품 접수 제한 예외로 규정되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의 접수가 가능하나, 「기부금품법」은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어려운 상황임.

[표 1] 관련 조문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단서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2022. 12. 8. 시행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대해 기부금품의 접수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모집(금전 제외)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부 활성화 촉진 및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도서관 기부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의회도서관과 영국·프랑스·독일 국립도서관은 기부 안내 및 모금행사, 기부금 약정 등을 통해 기부금품의 접수 및 모집이 가능하고¹⁾,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기부금품의 접수만을 규정하고 있음([참고 1] 해외 사례 참조).

또한,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에 대한 법률의 연혁을 보면, 1949년 제정된 「기부통제법」에서 시작하여 「기부금품모집 금지법(1951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1995년)」을 거쳐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년)」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의 입법적 논의는 큰 틀에서 규제 완화의 기초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동안의 인식 변화와 확산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²⁾

다만, 개정안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받으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금품의 모집은 그 모집방법의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각 근거 법률을 개정하여 모금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도서관 사례: 미국·영국은 기업기부 및 유산·주식 기부 등을 안내하고 기부금 약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프랑스는 기부자의 세금공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기부금 약정 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 모금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멤버십을 통해 기부를 약정하고 멤버십 가입 외의 기부도 안내하고 있음.

2) 제17대 국회(2011. 11.18.)와 제18대 국회(2013. 11.29.)에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법률의 제명 및 목적 수정, 사후등록제, 형벌사항을 과태료로 전환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으로 개편하는 내용임(출처: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2020. 12. 제71호 국회입법조사처)

참고로,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른 11개의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11개 법률 중 특례 인정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자금법」상 외국인·법인(단체)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된 점, 연간 모금한도 설정이 곤란한 점, 회계처리·벌칙 등의 장치가 마련된 점을 고려하였고, 「결핵예방법」은 기부자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받는 「기부금품법」의 모금방식과 달리 크리스마스철 판매 수익금을 모금(기부금)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모금을 인정하고 있음.([참고 4]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른 11개 법률 모집특례 인정 사유)

[표 2] 기부금품의 접수 및 모집 허용 특례 비교

접수 허용 특례	모집 허용 특례
■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접수 허용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u>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u>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 입법 사례: [참고 3] 참조 「도서관법」 제47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 「기부금품법」 제3조에 직접 법률 규정하여 모집 허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예술인복지법」 제10조의2 「국회도서관법」 제11조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8, 제69조의4 등 다수 법률 있음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³⁾를 고려할 때,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동법 적용(기부금품 모집 제한)의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례 :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금전 등의 <u>기부</u>) ① · ② (생략) <u><신설></u>	제9조(금전 등의 <u>기부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 <u>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u>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문의처

02)6788-5378

□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기부금품 모집

- (도서 기증) 기증할 자료 목록을 먼저 송부하여 의회도서관 직원 검토를 거친 후 기증 여부 결정 (선별적으로 접수)
 - (기부금 약정) 기부금 약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부금 모집
 - 기부할 프로젝트 선택 가능(예: 의회 법률도서관, 전국 도서 축제, 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 서비스, 희귀도서 및 특별 컬렉션, 학술프로그램, 세계디지털도서관 등)
 - 기부금액 선택 가능 : 최소 \$25
 - 기부자 혜택 : 세금공제, 미 의회도서관 기념품샵 할인, 뉴스레터 제공, 도서관 전시 및 행사 초대 등
 - (기부 안내) 기업기부, 유산 및 주식 기부 등을 안내
 - 유산 상속 대상으로 미 의회도서관 지정 가능,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미 의회도서관 지정 가능함을 안내
 - 주식 및 펀드 기부
- ※ 미국의 경우, 도서관에 기금을 지원하는 민간 재단(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등)의 기금 혜택을 희망하는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지원 기금에 대해 응모를 통해 기부를 받는 방법도 있음.

□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기부금품 모집

- (도서 기증) 목록 접수 후 기증 여부 결정 (선별적 접수)
- (기부금 약정) 최소 £5 이상 연간 기부금 약정 프로그램 운영
- (기부 안내) 주식 기부, 유산 기부, 특정 프로젝트에 기부 등 프로그램 소개, 미국인이 영국 도서관에 기부하는 방법 안내

□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 약정) 프로젝트별 지원 기부금 약정 프로그램 운영
- (기부 모금행사) 별도 모금행사 운영(최소 \$2,000)
- (기부 안내) 기부자의 거주국가에서 세금공제 받는 법 등을 안내, 국경에 관계 없이 기부 가능한 민간 재단 소개

□ 독일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 Bibliothek): 기부금품 모집

- (기부 멤버십 운영) 멤버십을 통한 기부 약정(세금공제)

- 개인 멤버십 연간 €50 이상, 법인 멤버십 연간 €255 이상
- 기프트 멤버십 : 멤버십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가능
- 멤버십 혜택 : 전시회 및 행사 초대, 이벤트 좌석 우선 예약, 전시회 시가이드 투어 제공, 간행물 발송 서비스 등
- (기부 안내) 멤버십 가입 외의 기부도 안내 (은행계좌 공개)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기부금품 접수

- (법적 근거)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6조
 - 국립국회도서관장은 그 봉사 또는 수집 자료와 관련하여 금전의 기증을 접수 가능함. 이 경우, 양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기부금 관리) 세입세출 외의 현금으로 관리(책임자는 관장)
 - 기부금의 목적에 따라 기부금 사용계획을 세워서 사용 필요
 - 관장의 승인 없이는 기부금의 출납 불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 각 나라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2

국립중앙도서관 등 기증 접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증자수	도서수	기증자수	도서수	기증자수	도서수
국립 중앙도서관	1,343명	10,029책	1,228명	29,403책	1,687명	22,244책
국립 장애인도서관	26개 관*	129책 22편**	28개 관	555책 996편	15개 관	472책 101편

* 기업, 복지관 등 민간기관, 공공기관 모두 포함

** 책: 도서 1권 단위, 편: 낱장자료 혹은 영상자료

※ 도서 외에 금전, 물품 등의 기부사례 없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기관 기증 외에 개인 기증자 없으며, 기증도서는 전량 디지털자료임

□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2022. 12. 8. 시행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예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 「국회도서관법」 제11조

제11조(금품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도서관자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8, 제69조의4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참고 4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른 11개 법률 모집특례 인정 사유

구분	법률명(특례기관)	특례인정	특례인정 사유
1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	'95.11.30.	- 외국인·법인(단체)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된 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 설정이 곤란한 점, 회계처리·벌칙 등의 장치가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인정
2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	'95.11.30.	- 크리스마스썰 판매 수익금을 모금(기부금)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정
3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95.11.30.	-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정
4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95.11.30.	- 관람료 중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특수성과 문화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부금품예외를 인정('82.12)하였으나, 관람료 모금방식 폐지('03.12.)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문예술법인·단체만 특례조항 유지·인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95.11.30.	- 여권발급 수수료 중 일정금액(15천원 한도)을 징수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06.3.24.	-모금단에별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단체의 난립, 중복배분에 따른 기부금품의 비효율적 활용, 상시 모집의 필요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정
7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06.3.24.	- 「기부금품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2006년 개정으로, 자연재해 피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 모집에 다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의 효율적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단일화를 위해 인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부·문화재청)	'06.3.24.	- 기부단체에 기부금품을 귀속시키고, 사용기한내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정 *문화유산의 경우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관리하는 경우 발생
9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06.3.24..	-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춘 '푸드뱅크사업자'에 한해 인정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10.6.8.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의 출연재단이므로 모집이 금지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정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95.11.30.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인구소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정

자료: 행정안전부(2022. 7. 기준) 자료 재정리